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7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8.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8.28.)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0차 교육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예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함에 따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함은 물론,

학생 건강검진 결과가 영유아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등과 연계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이력이 지속·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학생들이 성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상황에서, 부모의 무관심 등 사유로 학생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김예지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